

# 코로나19 관리지침

## [인공신장실용]

(대한신장학회/대한투석협회, '24.08.26)

○ '대한신장학회'와 '대한투석협회'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**코로나19 (COVID-19) 관리지침(인공신장실용)**을 마련함

※ 향후 발생 상황과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사례정의, 대응절차 등 주요 내용은 변경 가능함

**1. 대상** : 혈액투석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

### 2. 목적

- 1) 코로나19 위기단계가 '경계'에서 '관심'로 하향되고 기존 <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>이 폐지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으나,
- 2)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콩팥병 환자는 주 2-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므로 '자가격리'에 제약이 따르고, 투석 환자들은 밀접한 공간에서의 투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감염병 확산이 쉽고,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,
- 3) 일상회복 속에서 투석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하고자 함

### 3. 사례 정의

- 1) 환자: 코로나19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자
- 2) 의사환자
  - 의심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

- 추정환자: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되며,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

\*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:

확인진단: 검체 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유전자 검출

추정진단: 검체 (비인두도말, 구인두도말, 가래 등)에서 특이항원 검출

#### 4. 인공신장실 준비 사항

- 1)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, 보호자에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하도록 교육한다.
- 2) 손소독제를 인공신장실 입구에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한다.
- 3) 비말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환경을 준비한다.
- 4) 대기실에서의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, 인공신장실 내 취식을 금한다.
- 5)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을 준수하도록 환자에게 교육한다. 예약 시 감염이 의심된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말고, 자가진단검사(RAT)를 시행하도록 한다. 증상이 있고 자가진단검사(RAT) 결과 '양성'인 경우, 의료기관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한다.
- 6)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안내한다.
- 7)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실한다.
- 8)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나 방문객을 통제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한다.

#### 5. 사례 관리

- 1)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(이하 사례 해당자)는 격리병실 또는 격리 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다.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환기가 유지되는 경우 기존

투석시행 의료기관에서 **코호트 격리투석**을 시행할 수 있다

- 2)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**입원 우선 대상**으로 고려하며,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에 입원할 수 있다.

**[코로나19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]**

-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
- 호흡곤란(일상생활 중에도 숨참)
-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°C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
- 조절되지 않는 고칼륨혈증(K >6.0) 이나 대사성산증(pH <7.2 또는 total CO<sub>2</sub> <10)
-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거나 항암치료 중인 환자
- 그 외 의료진의 판단하에 입원이 필요한 자  
(요독증상, 영양실조,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당뇨)

- 3) 60세 이상, 기저질환 동반자에서는 초기 치료제(렘데시비르 또는 라게브리오)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.
- 4) 혈액투석을 위해 투석기관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동한다.
- 5) 사례 해당자의 투석 시행 시 첫 투석 전 증상 발현 여부 및 시기, 격리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일반혈액검사, 생화학검사,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한다.
- 6) 외래 투석 환자는 매일 혈압, 체온, 산소 포화도, 증상을 검토하여 입원 우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,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.
- 7) 의료진은 사례 해당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장갑, KF94 또는 N95 마스크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를 착용한다.
- 8) 환자 접촉 전·후, 개인보호구 탈의 후 손 위생을 준수한다.
- 9) 투석장비는 사용 후 제조사의 권고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.
- 10) 투석 시행 후 절차에 따라 청소·소독하고 소독 후 최소 1시간 환기(시간당 6회 환기 기준)한다.

11) 혈액투석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(의료기관 내 이동 최소화)하고 밀폐하여 처리한다.

12) 격리해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사례 해당자로 외래에서 투석하는 경우, 격리 해제시점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로 한다. (단,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)

13) 격리해제 후에는 다른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. 격리해제 시점에서 PCR 음성 확인은 불필요하다.

#### ※ 참고사항

- 「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리지침」 (2024.8.16.)